



Web Contents



2024년 05월 03일 10시 00분

전체 (383)	상패류 (238)	관인류 (0)	기념류 (4)
견본류 (11)	기타 (130)		

9개 총 383건 제목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업무표장등록증

등록 제 0000845 호

출발 번호 제 2000-0000010 호
출발 일자 2000년 01월 22일
등록 일자 2001년 04월 28일

업무표장권자 목포시
전남 목포시 용양1동 1188-2 목포시청


업무표장을 사용할 업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용 등인



위의 표장은 상표법에 의하여 업무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01년 04월 28일

특 어 정

목포시 일본 벳부시 자매도시 제...

공공기록물
기밀
소속처
정보



목포시 벳부 연울합시 자매도시 ...

공공기록물
기밀
소속처
정보

목포시 드림스타트와 목포시의료원 서비스 지원 및 후원 협약서

목포시 드림스타트와 목포시의료원은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후원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대상 아동에게 서비스 지원 및 후원에 있어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감염에 공동으로 협력 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협약내용)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일의에 의해 결정한다.

- 건강감염은 2018년 아동 건강검진 검사항목인 기본검사, 소변검사(요단백, 요당, 요산), 구강검사, 혈액형검사(ABO, RH), 혈액검사(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 등), 간장질환(AST, ALT), 신장질환(요소질소, 크레아티닌), 고지혈증검사(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염검사(B형간염 항원, B형간염 항체), 심장검사(심전도 검사), 척추측만증 검사, 망막검사 등
- 목포시의료원은 2018년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 총비용 18,369,000원 중 8,749,000원을 후원한다.
- 드림스타트에서는 총 본인부담금 9,620,000원을 목포시 의료원에 지원하며, 대상자에게 무통을 제공한다.

목포시 드림스타트와 목포시의료원
공공기록물
기밀
소속처
정보

목포시 드림스타트와 목포시 의료원
은 드림스타트 사업 대..

국가생물다양성기원연합회와의 생물다양성자원 공동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정

국가생물다양성기원연합회(이하 "연합회") 이라 한다.는 생물다양성 자원을 국가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활용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정에 기하여 체결하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은 연합회와 생물다양성정보를 관련된 협력활동을 통해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협약 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생물다양성정보와 관련 과학기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화 공동 구축
- 생물다양성정보와 관련 학술적 연구의 대응 교육 및 전시 연계 실시
- 생물다양성정보와 관련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공동 추진
- 관련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 관련 인력 교류 교육 및 학생상생 등 시행
- 기타 협의기관의 발전과 주요성원에 대한 사항

제3조(협력범위) 구성 운영) 본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사업을 추진 할때서임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협력위원회는 협약 기관과

국가생물다양성 기관 연합 협정서

생물다양성자원 내의 연구의 촉진과 관련 정보구축 등 국가의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기관이 "협력기관" 이라 한다.는 본 협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은 협력기관이 생물다양성정보 및 관련 과학기술의 협력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생물다양성정보를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향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협약 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생물다양성정보와 관련 과학기술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화 공동 구축
- 생물다양성정보와 관련 학술적 연구와 대응 교육 및 전시 연계 실시
- 생물다양성정보와 관련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공동 추진
- 관련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 관련 인력 교류 교육 및 학생상생 등 시행
- 기타 협의기관의 발전과 주요성원에 대한 사항

제3조(협력범위) 구성 운영) 본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협력위원회는 협약 기관과

4개 기관 연합 업무 협약서

자연사 분야의 학술적 연구의 촉진과 전시 교육 및 상호 협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기관이 "협력기관" 이라 한다.는 본 협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은 협력기관이 자연사 분야 연구 및 관련 연구 사업 협력 활동을 통해 연구, 전시 자료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상호발전과 우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협약 기관은 호혜협력의 바탕으로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자연사 분야에 관한 학술적 연구
- 자연사 전시 자료 교류 및 공유
- 자연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의 공동 활용
- 전문 인력 지원 교류 및 상호 연계 교육 지원

각기 차이가 발탁된다는 수직화, 발탁된다는 발탁 기관이 각기 지정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회에 따라 정한다.

제4조(협의대상) 본 협정 제2조에 규정된 협력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협의는 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제5조(협력기간)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력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협정 당사자 중 협약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약기간은 자동으로 5년간 연장한다.

제6조(기타 사항) 협력기관은 본 협정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및 활동범위를 사전에 상대방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활용한다.

본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협력 기관장의 날인 후 각 1부에 보관한다.

2002년 5월 3일

각기 지정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회에 따라 정한다.

제4조(협의대상) 본 협정 제2조에 규정된 협력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협의는 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제5조(협력기간)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력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협정 당사자 중 협약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약기간은 자동으로 5년간 연장한다.

제6조(기타 사항) 협력기관은 본 협정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및 활동범위를 사전에 상대방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활용한다.

협력기관은 본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협력 기관장의 날인 후 각 1부에 보관한다.

2008년 3월 19일

5. 협약기관의 상호 조율
6. 기타 협약기관의 활성화와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협력기간)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나. 협정 당사자 중 협약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약기간은 자동으로 3년간 연장한다.

제4조(기타 사항) 협약 기관은 본 협정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및 활동범위를 사전에 상대방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활용한다.

생물다양성자원 공동 구축 및 활용...

공공기록물
기타
유형
기록물
협약서
체결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회원과 업무협정

국가생물다양성 기관 연합 협정서

공공기록물
기타
유형
기록물
협약서
체결

생물다양성자원에 대한 연구의 증진과 관련 정보 구축을 ..

4개 기관 연합 업무 협약서

공공기록물
기타
유형
기록물
협약서
체결

자연사 분야의 학술적 연구의 증진과 전시 교류 및 상호..

국가생물다양성 기관 연합 협정서

생물다양성자원에 대한 연구의 증진과 관련 정보 구축 등 국가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련 기관이후 협약기관이라 한다. 본 협정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은 협력기관이 생물다양성정보 및 관련 과학기술의 협력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생물다양성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증진하고 정보의 대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범위) 협력기관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생물다양성자원 및 관련 과학기술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화 공동 구축
2. 생물다양성자원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대중 교육 및 전시 연계 실시
3. 생물다양성자원 및 관련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공동 추진
4.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의 공동 활용
5. 전문 인력 교류 교육 및 학생십습 등 사업
6. 기타 협력기관의 발전과 상호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본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 구성한다. 협력위원회는 협력 기관이 각기 지정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회에 따라 정한다.

제4조(협의대상) 본 협정 제2조에 규정된 협력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협의는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제5조(협력기간) 가. 본 협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협정 당사자 중 협약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약기간은 자동으로 5년간 연장한다.

제6조(기타 사항) 협력기관은 본 협정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및 활동범위를 사전에 상대방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활용한다.

국가생물다양성 기관 연합 협정서

공공기록물
기타
유형
기록물
협약서
체결

생물다양성자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다양한 정보 전..

(재)전남테크노파크 목포자연사박물관 업무협약서

【(재)전남테크노파크(이하 "무"이라 한다)와 목포자연사박물관(이하 "국"이라 한다)간에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남테크노파크 기관 구축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조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협조범위) "국"과 "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호 협의를 거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발전 활성화
2.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
3. 시·군·구 도자문화 발전, 관련기업 투자유치 및 국제화 정보제공
4.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일체의 공동협력과 상호교류
5. 문화유산 도제문화 발전진흥을 위한 기술·주요조사·분류 및 자원 "국"과 "무"는 상호 요청에 따라 각자 수행하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며, 각자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제2조(정보교환) "국"과 "무"는 정기간담회 등 상호 필요한 자료를 교환하고, 상대방 직원의 추진 업무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국"과 "무"는 상대방 진행중,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게재·회람할 수 있으며, 회람을 받은 상대방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3조(제원외 상호교류 등) "국"과 "무"는 공동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방기관에 제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 받은 기관은 사무실,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업무협약서

공공기록물
기타
유형
기록물
협약서
체결

전남테크노파크와 목포자연사박물관간의 업무 협조 약정을 ..

MokPo - Si
Web Contents

